

삼성카드(주)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

삼성카드(주)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.

2021.1.27.

— 다 음 —

1. 상 호 : 삼성카드(주)

2. 혁신금융서비스의 종류, 내용 등 업무범위

- (여신전문) 부모가 본인의 신용카드 이용한도 내에서 이용기간과 이용한도를 별도로 지정하여 미성년자인 자녀가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(가족카드)를 발급하는 서비스

3.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의 범위 등 업무대상

- 삼성카드 개인 신용카드 회원 중 만 12세 이상이면서 중·고등학생인 미성년자 자녀의 가족카드 발급을 희망하는 부모 및 자녀

4. 혁신금융서비스의 업무방법

- 부모가 카드사 앱 등을 통해 자녀 명의의 가족카드 이용한도와 이용기간을 관리하고, 자녀의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부모의 신용카드 이용금액에 합산하여 대금 청구

5. 규제특례 대상 금융관련법령

-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제3항제2호 및 시행령 제6조의7제2항

【여신전문금융업법】

제14조(신용카드·직불카드의 발급)

③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.
2.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

【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】

제6조의7(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 모집방법 등)

②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이상인 자”란 「민법」 제4조에 따른 성년 연령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. (이하 생략)

6. 부가조건

- (발급연령) 만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발급할 것
 - (이용한도 제한) 미성년자의 가족 신용카드 월 이용한도는 10만원, 건당 결제한도는 5만원 이내로 발급하며,
 - 가족카드 본인회원인 부모의 신청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한도를 증액할 수 있되, 이 경우에도 월 50만원의 이용한도 상한 내에서 운영할 것
 - (이용업종 제한) 미성년자 대상 가족카드인 점을 감안, 신용카드사가 교통, 편의점, 문구점, 학원, 서점 등으로 결제 가능한 업종을 제한할 것
 - (이용상황 모니터링)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(FDS) 등을 통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
 - 또한, 자녀가 가족카드 결제 시마다 부모에게 메신저 알림, 문자메시지(SMS) 등의 수단을 통해 통지될 수 있도록 할 것
 - (금융교육 실시) 미성년자 자녀에게 금융교육 콘텐츠(교육프로그램, 서적 등)를 제공할 것
 - (신청내용에 따른 운영) 미성년자에 대한 가족카드 발급 권한 부여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내용*에 따라 충실히 운영할 것
- * 부모의 신청을 전제로 일반카드로 발급하되 자녀의 발급 동의를 얻고, 부모가 자녀의 사용업종을 통제하고 이용한도 및 이용기간을 결정하는 등 신청 업무범위, 사업계획 등에 맞게 운영

7. 지정일 : 2021. 1. 27.

8. 지정기간 : 지정일로부터 2년